

2015년 공·사립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을 위한 평가 및 지원 계획

작은도서관에 대한 합리적 지원을 위하여 운영 세부영역을 현장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차등지원함으로써, 한정된 재정적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I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공립 및 자치구 등록 사립 작은도서관 845관중에서 380관
- 선정방법 : 자치구별 현장 평가 결과를 근거로, 운영실적이 좋은 도서관 선정
- 지원내용 : 1관당 150만원~250만원 차등지원 (자료구입비, 운영비)
- 사업기간 : 2015년 1월~12월
- 사업예산 : 760백만원
 - 예산과목 :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마을권 독서문화공간 조성, 도서관 육성지원, 작은도서관육성지원(100-308-01)
- 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29조, 제32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2014.7.31.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사업명	사비보조율	비고	사업명	사비보조율	비고
77. 공·사립문고 육성지원	정액	2백만원/개소	57. 공·사립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정액	◦ 1~3백만원/개소 ◦ 평가결과 차등지급

※ '14년까지 1관당 200만원 정액지원하였으나 '15년부터 도서관 운영 실적을 고려한 차등지원하여 지원효과를 증대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 도모

II 추진방향

○ 추진방향

- 지역생활권에서 소규모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자료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운영 활성화에 기여
- 합리적·객관적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함으로써 공정성 담보와 지원효과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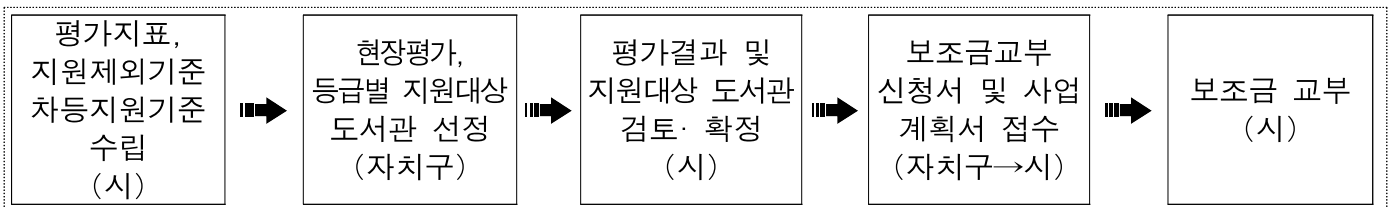
※ 평가지표 :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와 자치구별 의견 수렴하여 '13년 1월 개선 완료(붙임 1 운영평가표)

○ 차등지원 등급

(단위:천원)

등급	지원금액	등급별 지원관수 비율
A	2,500	20~40%
B	2,000	40~60%
C	1,500	20~40%

○ 지원절차



III 세부사업내용

1. 지원 도서관 선정

○ 선정주체 : 관할 자치구

- 평가지표 및 배점, 지원제외 기준, 차등지원 등급별 비율은 서울시에서 수립, 현장평가와 등급별 지원대상 작은도서관 선정은 자치구에서 추진

○ 선정방향

- 자치구별 지원금액 내에서 지원대상 도서관 선정
- 현장실사에 근거한 평가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 순위에 따라 등급별 지원관수 비율에 맞게 등급별 지원대상 도서관 선정
- 선정된 도서관은 해당 등급의 금액으로 지원
-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은 선정에서 제외(붙임 2 참조)
- 사립 도서관 지원관수 비율은 전체 지원관수 중 60%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등급별 지원관수 등은 붙임4의 '도서관별 운영평가 결과'의 '등급별 지원관수' 1안~2안 예시 참조

【사립 60% 이상 선정 및 고득점 순위순 선정 예외】

- 평가결과 지원가능한 사립도서관 수가 부족할 경우
- 2015년 마을기업, 2015년 주민참여사업 등 서울시와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해당 경우 지원 제외
- 붙임 2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할 경우

⇒ 이상과 같은 사유일 경우 사립 도서관 지원비율(60%) 조정가능, 차순위 도서관 지원 가능

2. 지원금액 배정

- 지원금액 : 특정 자치구에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금액 배정
 - 2015.1월말 기준 서울시 전체 작은도서관수 대비 자치구 작은도서관수에 비례하여 자치구별 지원금액 확정(1관 평균 200만원으로 산정)
 - ※ 자치구별 지원금액 내에서 등급별 도서관 수 결정하고 지원대상 도서관 선정

【2015년 자치구별 지원금액】

연번	자치구	작은도서관 수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계	공립	사립	예상 지원관수 (380관)	지원금액 (760,000)
합 계		845 (100%)	403 (48%)	442 (52%)		
1	종로	25	14	11	12	24,000
2	중구	13	11	2	6	12,000
3	용산	22	10	12	10	20,000
4	성동	25	14	11	11	22,000
5	광진	25	14	11	11	22,000
6	동대문	25	13	12	11	22,000
7	중랑	34	15	19	15	30,000
8	성북	46	16	30	21	42,000
9	강북	33	11	22	15	30,000
10	도봉	28	13	15	13	26,000
11	노원	34	23	11	15	30,000
12	은평	71	13	58	32	64,000
13	서대문	23	10	13	10	20,000
14	마포	32	15	17	14	28,000
15	양천	40	17	23	18	36,000
16	강서	44	22	22	20	40,000
17	구로	59	14	45	27	54,000
18	금천	17	9	8	8	16,000
19	영등포	36	20	16	16	32,000
20	동작	35	18	17	16	32,000
21	관악	44	32	12	20	40,000
22	서초	32	19	13	14	28,000
23	강남	16	13	3	7	14,000
24	송파	52	25	27	23	46,000
25	강동	34	22	12	15	30,000

3. 도서관 평가

- 대 상 : 서울시내 공립 및 등록 사립 작은도서관
- 방 법
 - 자체 평가계획 수립 후 현장실사에 의거하여 평가(붙임 2 운영평가표 기준)
 - 현장평가반 편성 : 자치구 도서관 관련 부서 주관으로 자체 합동 현장평가반 편성 후 평가 실시
 - ▶ 자치구 담당자, 공사립 작은도서관 관계자 또는 공공도서관 관계자와 연계한 합동 현장평가 실시
 - ▶ 운영평가표에 반드시 자치구 담당자, 합동 현장평가자, 평가대상 도서관 운영자가 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합동 현장평가 미이행시 재평가 실시)
 - 자치구에서는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현장실사 전에 해당 도서관이 도서관 규정, 운영위원 명단, 프로그램 진행표, 소장도서 리스트, 대출현황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 도서관에 일정 공지

4. 운영평가표 및 지원대상 도서관 목록 제출

- 운영평가표 제출
 - 도서관별 운영평가표 스캔파일 또는 인쇄사본으로 제출(붙임 2 양식)
- 평가순위 및 지원대상 도서관 목록 제출
 - 운영평가표 근거로 선정방향에 맞게 지원대상 선정하고 붙임3, 4 양식으로 제출
 - 고득점 평가 도서관 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동점시는 자치구 판단하에 제출
 - ▶ 도서관별 운영평가 내역 제출
 - ‘붙임 2 운영평가표’ 도서관별 점수를 ‘붙임 3 운영평가 내역’에 입력
 - ▶ 도서관별 운영평가 결과 제출 (붙임 4 양식)
 - 왼쪽 ‘운영평가 결과표’와 오른쪽 ‘공·사립별 등급별, 지원관수’를 입력
 - ※ 붙임4 ‘도서관별 운영평가 결과’의 등급별 지원관수 1안~2안 예시 참조

5. 지원대상 도서관 검토 및 확정

- 자치구에서 제출한 운영평가표, 운영결과 내역, 지원대상 도서관 목록을 검토 후 지원대상 도서관 확정하여 추진일정에 맞추어 5월초 지원

IV

추진일정

- '15. 2.9(월)~3.13(금) : 공·사립 작은도서관 현장평가와
지원 대상 도서관 선정(자치구)
- '15. 3.16(화)~3.31(화) : 지원 대상 도서관 검토와 확정(시)
- '15. 4.1(수)~4.17(금) :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
(작은도서관→자치구→시)
- '15. 4.20(월)~5.1(금) : 사업계획서 검토
- '15. 5.4(월) : 시비보조금 교부